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92번지 일원 파주와동지구 내 A1블록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24 별숲오르트]

■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90세대 중 11세대 [전용면적 55㎡ 11세대]

LH에서는 블록(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 등)에 2건 이상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20.)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0.05.29., 2021.09.30.)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서 계약 시 계약금(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잔금(9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국에 거주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체결 시 일반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적용)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파주와동 A1블록은 총 건설호수 434세대 중 29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며 나머지 144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20.)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0.05.29., 2021.09.30.)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세대(1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0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2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웹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팜플릿(최초 모집공고 기준)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호지정 대상 순번의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에 현장 견본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상 순번에게 열람시간 및 방법 등 개별 안내)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어,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는 분양계약자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된 '별숲오르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종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다)]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흡연으로 구성될 세대"란 애비신홀부부가 일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확인이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제(청약률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체결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불이익(계약해제,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인터넷 청약접수 및 순번추첨 후 순번대로 동호지정 계약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인터넷청약접수	당첨자발표(동호지정 순번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23.12.01.(금)	'23.12.13.(수)~12.14.(목) 10:00 ~ 17:00	'23.12.18.(월) 16:00	'23.12.20.(수) ~순번 소진 시까지 * 대상자에게 방문일정 등 세부사항 개별 안내	순번 소진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현장접수 불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	LH 고양 뉴홈 홍보관	LH 고양 뉴홈 홍보관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 고양 뉴홈 홍보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동호지정 순번 추첨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자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문의 : HUG 또는 은행)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최초 모집공고 기준)로 최장 30년간 임대료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기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공고 단지의 경우 의무가입 해당 없으며 선택가입 가능)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용자금 대환(재대출)을 선택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됨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동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 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당첨자 참고 : 아래 중 해당하는 제한사항 1개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삭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7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5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85초과	3년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파주와동지구 A1블록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90세대 중 17~27층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1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금회 공급호수	공급대상 동호	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동	기타 공동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합 계											
A1	055.0000A	55A	확장	55.83	24.4181	8.1025	35.7170	124.0676	27.7962	3	1201-1603, 1203-1802, 1205-1404
	055.0000C	55C	확장	55.68	24.8482	8.0808	35.6211	124.2301	27.8775	6	1203-2005, 1203-2305, 1203-2701, 1205-801, 1205-2002, 1205-2102
	055.0000D	55CL	확장	55.55	24.6050	8.0618	35.5379	123.7547	27.7541	2	1202-1502, 1204-1502

* 동번호는 최초 공고 당시 101~105동이었으나, 동번호체계에 따라 1201~1205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파주와동 A1블록은 총 건설호수 434세대 중 29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며 나머지 144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패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금회 공급의 경우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 후 90일) 내에 잔금 완납 및 응자금 상환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총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입주시	
055.0000A	55A	5층~최상층	기본형	241,900	24,190	162,710	55,000
055.0000C	55C	5층~최상층	기본형	237,840	23,784	159,056	55,000
055.0000D	55CL	5층~최상층	기본형	236,740	23,674	158,066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 * 금번 공급대상의 주택가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격에 공급시점 차이에 따른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총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 또는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응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응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응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 공간선택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 아래의 공간옵션으로 시공되며,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팜플릿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공간선택 내용	대상 동호
055.0000A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1201-1603, 1203-1802
	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1205-1404
055.0000C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1203-2005, 1203-2305, 1203-2701, 1205-801, 1205-2002
	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1205-2102
055.0000D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	1204-1502
	공간확장형(침실2/알파룸 통합)	1202-1502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 건축공정상 선택품목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기존계약자의 옵션 선택내역 따름)
- * 추가선택 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 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미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팜플릿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① ~ ⑤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②와 ④은 ②-1, ②-2 중 하나만, ④-1, ④-2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 ③는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며, ⑤는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으로 설치됩니다.
- * ④-1, ④-2는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이 설치되어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으로 기본 냉매배관을 제공합니다.

주택형	동호	유형	선택품목	규격	선택 시 납부조건			비고
					합계 (단위:천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055.0000A	1201-1603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780*2,290 PET	1,508	150	1,358	
		바닥재	③-1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에어컨	④-1 거실+침실1+ ■-2 거실+침실1+침실2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주방가전	⑤ 하이브리드 쿡탑		5,370	537	4,833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780*2,290 PET	1,508	150	1,358	
			③-1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④-1 거실+침실1+ ■-2 거실+침실1+침실2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 하이브리드 쿡탑		5,370	537	4,833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1205-1404 (침실2/알파룸 통합)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780*2,290 PET	1,508	150	1,358	2-1,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침실2 불박이장 (옷장+수납장)	L=2,400*2,290 PET	2,200	220	1,980	
			■-2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2 거실+침실1+ ■-2 거실+침실1+침실2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바닥재	■ 하이브리드 쿡탑		5,370	537	4,833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시스템 에어컨	■-2 주방가전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2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055.0000C	1203-2005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1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2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2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3-2305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2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3-2701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2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5-801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5-2002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5-2102 (침실2/알파룸 통합)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1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580*2,290 PET	1,430	143	1,287	
	1202-1502 (침실2/알파룸 통합)	바닥재	■ 2 침실2 불박이장 (옷장+수납장)	L=2,400*2,290 PET	2,200	220	1,980	2-1,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시스템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에어컨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주방가전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1204-1502 (침실2/알파룸 분리)	가구	■ 침실1 불박이장	L=3,000*2,290 PET	2,740	274	2,466	
		■ 침실2 불박이장 (책상+침대장+수납)	L=2,620*2,290 PET	1,430	143	1,287		
		바닥재	■ 기능성 품카펫	두께 6mm	선택 시 무상 제공		미선택 시 강화합판마루 제공	
		시스템	■ 1 거실+침실1		3,705	370	3,335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미선택 시 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제공
		에어컨	■ 2 거실+침실1+침실2		5,370	537	4,833	
		주방가전	■ 하이브리드 쿡탑		551	55	496	미선택 시 가스쿡탑 제공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실별 구분 가격						남부방식		
주택형	내역	계	침실1	침실2	알파룸	거실	주방	욕실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055.0000A	기본공사비(A)	74,511	10,156	7,797	4,933	14,751	32,957	3,917		
	확장공사비(B)	84,673	11,959	8,379	5,284	16,439	38,231	4,381		
	계약자부담액(B-A)	10,162	1,803	582	351	1,688	5,274	464	1,000	9,162
055.0000C	기본공사비(A)	71,415	13,834	4,919	2,255	9,690	40,717	-		
	확장공사비(B)	78,499	15,501	5,119	2,283	10,322	45,274	-		
	계약자부담액(B-A)	7,084	1,667	200	28	632	4,557	-	1,000	6,084
055.0000D	기본공사비(A)	72,872	13,076	5,794	2,884	10,791	40,327	-		
	확장공사비(B)	80,526	14,766	6,089	2,972	11,567	45,132	-		
	계약자부담액(B-A)	7,654	1,690	295	88	776	4,805	-	1,000	6,654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 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입주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기본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1세대 1주택)로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참조)을 갖춘 자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분의 직계존속 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 및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4. 입주자 선정방법

- 순번추첨 동호지정
 -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입주 및 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등)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전매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 개정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입주 및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최초 모집공고일인 2019.12.20. 기준)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체결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이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 등')에 2건 이상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이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3.12.13.(수) 10:00 ~ 2023.12.14.(목)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릿(최초 모집공고 기준 작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내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12.14.(목) 오후 7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접수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호회망타운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 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호회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3.12.13.(수) 10:00 ~ 2023.12.14.(목)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계약체결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동호지정 순번 추첨

- 추첨 일시 : 2023년 12월 18일 (월) 11:00
- 추첨 내용 : 동호지정 순번 추첨(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추첨)
- * 추첨 참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12월 15일(금) 16시까지 전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2-371-2966)

2. 당첨자발표(동호지정 순번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발표(동호지정 순번 발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서류구비 필요)	선착순 현장계약 (순번 소진 후)
'23.12.18 (월) 16: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3.12.20.(수) ~ 순번소진시 까지 (대상순번에게 '동호지정 시작시간' 등 세부사항 개별 안내)	순번 소진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LH 고양 뉴홈 홍보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동호지정 순번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 자격검증을 시행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에 참여 가능한 순번대상자에 대해 개별 연락을 통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세부사항(동호지정 시작시간, 견본세대 열람시간 및 방법 등)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안내된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 전까지 지정장소(고양 뉴홈 홍보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 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한 후 당일 16:30 전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6:30 이후 계약 불가, 동호지정 무효 처리)
- '동호지정 시작시간' 개시 이후 입장하신 경우 당초 부여받은 순번에 관계 없이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이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일 16:00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까지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당초 부여받은 순번에 관계 없이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이후로 재등록하여야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당일 16:00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선착순 현장계약 : 금번에 추첨된 순번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잔여세대가 남아있는 경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선착순 현장계약 일정 및 세부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며, 선착순 현장계약 가능일 오전 10:00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도착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하며, 10:01 이후 도착자부터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되며 개시 시점 이전 도착자의 순번추첨 및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완료된 후 진행합니다.

4. 동호지정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계약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주택공급금액 10% + 선택사양품목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어,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td> <td>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td> </tr> <tr> <td>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용에 한함) 및 인감도장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td> <td>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td> </tr> <tr> <td>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d>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용 에 한함) 및 인감도장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공고 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용 에 한함) 및 인감도장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 도장(인감 도장 외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구비)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관
(1)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3)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해당자 (예비)배우자, 세대원	(예비)배우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분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기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본인	•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시가 제공(청약플러스에 게시)하는 해당 동의서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LH
(7) 무주택확인각서 (공시양식)	필수	본인 및 세대원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 여부, 청약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시 계약 취소 (계약 현장에 비치)	LH
(8)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확인서류로 임신진단서만 제출가능(임신확인서 제출불가)	해당 병원
(9)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1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해당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계약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현장에 비치)	LH
(11)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2.2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플랫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증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선택사항포함)의 10퍼센트]
- 공유대지에 대한 저작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현재 건축공정상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구 및 단지 예건 등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2.20.)**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플랫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5. 동호지정 및 계약 장소, 홈페이지 등 안내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분양문의 및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양 뉴홈 홍보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파주와동 A1블록 청약 상담 : 02-371-2966 (평일 10: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청약플러스 : http://apply.lh.or.kr

